

사회관계장관회의	
회 차	2023 - 10
안전유형	심의

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

2023. 12.

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배경 및 경과	1
II. 글로벌 정책동향 및 국내 보호지역 현황 ...	3
III. 그간 성과와 개선방향	6
IV. 비전 및 목표	7
V. 추진과제	9
VI. 이행방안	16

I. 배경 및 경과

1. 추진 배경

- **쿤밍-몬트리올 GBF***(이하 “K-M GBF”)에서 ‘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%를 보호지역과 OECM**으로 관리 목표(30by30) 설정(CBD COP15, '22.12)

* (GBF :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)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(CBD COP 15)에서 채택, 전 세계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23개 실천목표 제시

- (CBD :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, 생물다양성협약) '92.6.5 채택, 196개 당사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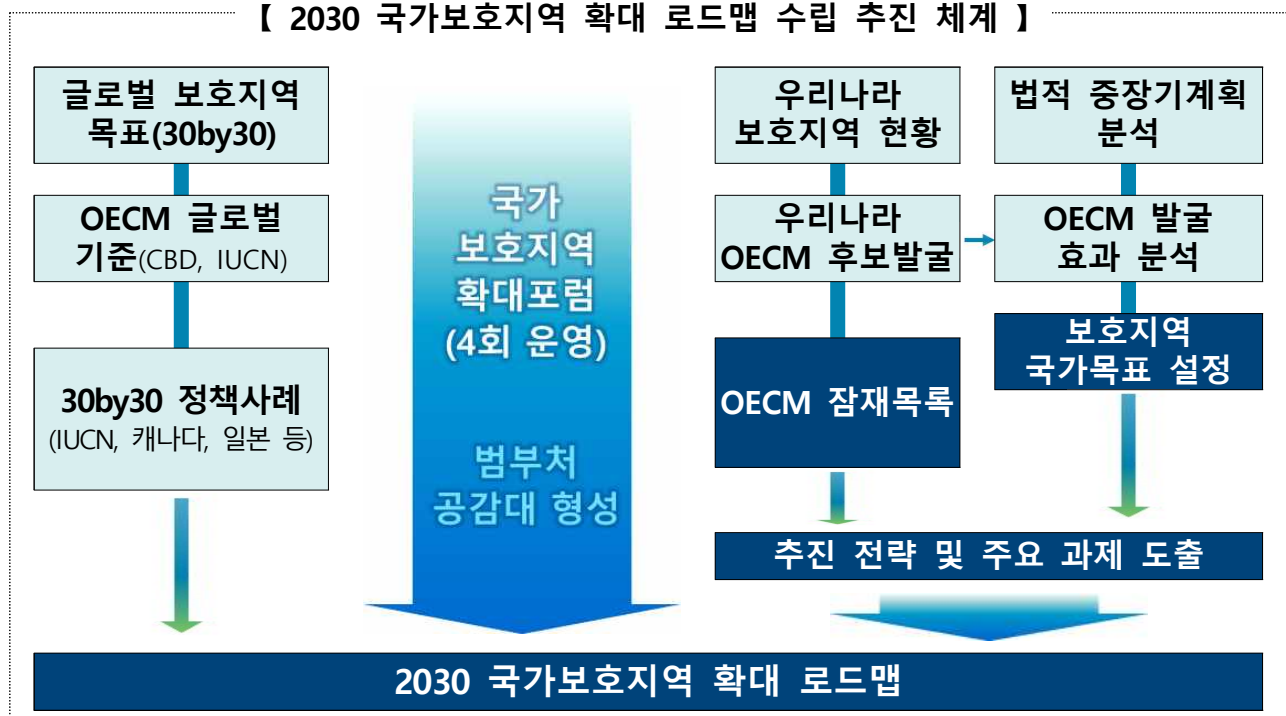
** (OECM : Other Effective Area-based Conservation Measure) 보호지역(Protected Areas)은 아니지만 장기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

- **생물다양성 보호지역 확대 연합***(High Ambition Coalition for Nature and People)에 우리나라 동참 선언(P4G 서울 정상회의, '21.5)

* '30년까지 전 세계 육상·해양 면적의 30%를 보전지역(보호지역+OECM) 지정 목표 (프랑스·코스타리카·영국 주도, '23.2월 기준 100여 개국 이상 참여)

- **국제사회와의 약속이행**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목표 설정, OECM 체계적 발굴·등재 방향 설정 등 국내 보호지역 확대 전략 필요

【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수립 추진 체계 】



2. 추진 경과

◇ 정부 내 협의기구를 운영*하여 국제사회 권고('30년까지 30)의 국내 이행방안 논의[보호지역 확대, OECM 발굴·등재 등], 공감대 형성

* (~'21) 정부 중심 협의체 → ('22~'23) 민·관·학 포럼(정부 기관 확대, 민간전문가 참여)

□ ('16.6~'21.10) '국가보호지역 관계기관 협의체*' 운영

* 5개 부처(환경부, 해수부, 국토부, 산림청, 문화재청), 4개 소속·산하 기관

□ ('22.7~11) 민·관·학이 참여하는 '국가보호지역 확대 포럼*' 운영(연4회)

* 5개 부처, 8개 소속·산하 기관, 전문위원(10명)

- OECM 관련 글로벌 기준의 국내 적용 방향 및 국내 잠재 유형 논의, 부처별 연구현황 공유 등

□ ('23.4~12) '국가보호지역 포럼*' 확대 운영(연 4회)

* 7개 부처, 11개 소속·산하기관, 민간 전문위원(14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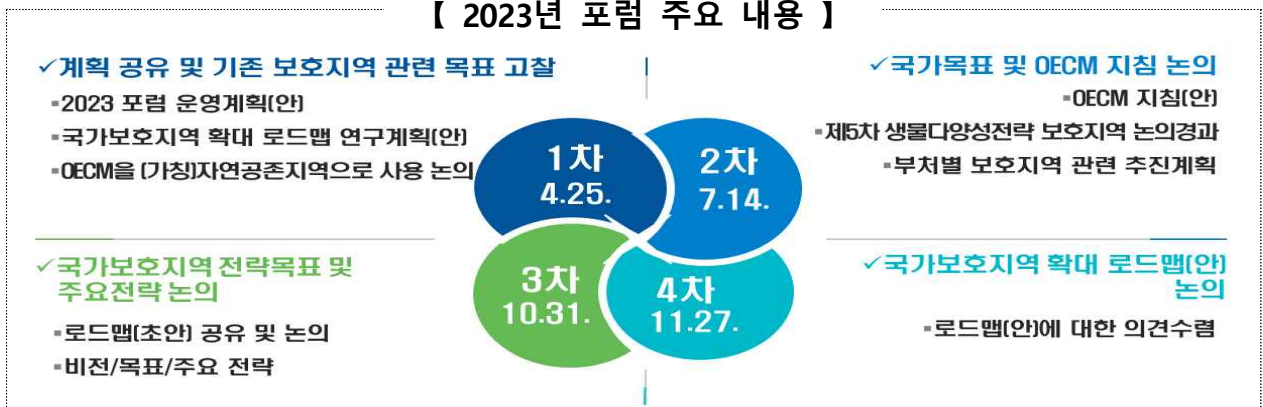
- 가칭자연공존지역*(OECM) 명칭, 국내 적용지침 등 도출(포럼 4회), 자연 공존지역 인식증진 설명회(1회) 및 시범등재 후보지 관계자 간담회(2회)

* 인식·수용성 증진을 위해 단순 번역어가 아닌 국내 용어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('22.10) 및 전문가 설문조사('22.10~11) 등을 통해 도출('23.4, 1차 포럼)

【 2023년 국가보호지역 포럼 참여기관 】

구분		참여기관
정부부처	7개	환경부, 해수부, 국토부, 농식품부, 국방부, 산림청, 문화재청,
소속·산하 기관	11개	국립산림과학원, 국립수목원, 국립생물자원관, 국립공원공단, 국립생태원, 해양환경공단, 한국해양과학기술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국립해양생물자원관, 국토연구원, 한국환경연구원
전문위원	14명	환경·해양·국토·농업·산림·문화재, 민간단체, 국제기구 등

【 2023년 포럼 주요 내용 】



II. 글로벌 정책 동향 및 국내 보호지역 현황

1. 글로벌 정책 동향

□ 글로벌 보전 목표(아이치 목표 11) 달성 현황

- '22년 기준 글로벌 보호지역 면적 비율은 내륙 17%, 해양 8%

< 글로벌 보호지역(PA+OECM) 면적(비율, %) 변화 추이* >

구분	1993	2004	2010	2020	2022
내륙	8.54	12.66	15.01	16.65	16.98
해양	0.52	0.71	2.49	7.74	8.26

* CBD 아이치 목표 11 달성 현황 분석자료 토대로 재정리(CBD/COP/15/INF/3)

- CBD PoWPA* 채택(COP7, '04), 아이치 목표-11** 채택(COP10, '10)으로 보호지역 면적은 증가하였으나, 글로벌 목표 달성에는 실패('20년 기준)

*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(Program of Work on Protected Area) : "Target 2010('10년까지 보호지역 10%)"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 프로그램

** (아이치 목표 11) '20년까지 육상 17%, 해양 10%를 보호지역과 OECM으로 지정

□ 보호지역 확대의 한계를 보완, OECM 개념 부각

- 2011-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에서 최초로 OECM 용어를 공식적으로 명시(COP10, '10)

- OECM 정의 채택(COP14, '18), OECM 지침* 제공(IUCN 세계보호지역 위원회, '19/'22)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OECM 발굴·보고** 확대

* ('19) Recognising and reporting OECMs, ('22) Site-level tool for identifying OECMs

** (글로벌 OECM 보고 현황, '23.3) 총 9개국 829개소(육상 634개소, 해양 195개소)

- K-M GBF에서 OECM을 포함한 글로벌 보전 목표(30by30) 채택(COP15, '22)

□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동참 노력

- EU, 캐나다, 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사회 권고(30by30)를 반영한 보호지역 확대 계획의 선제적 발표 및 동참 노력

참고

국제기구·주요국의 보호지역 확대 계획

구분		주요내용	계획년도
국제 기구	 HAC for N&P	○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확대 연합(High Ambition Coalition for Nature and People) -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양 면적의 30%를 보호지역 및 OECM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연합 ※ 공동의장국(코스타리카, 프랑스, 영국) 등 114개국 가입	~'30
	 CBD	○ 쿤밍-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('22.12) - 2050 비전(자연과 조화로운 삶) 달성을 위한 2050 목표(4개), 2030 실천목표(23개)로 구성, 구체적·도전적 목표 포함 △육상·해양의 30%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·관리, △훼손 생태계 30% 복원, △과잉 영양유출 반감, △침입외래종 유입·정착률 반감 등	~'30
국가	 EU	○ 2030 생물다양성 전략('20.5, 그린딜 경제분야 로드맵 일부) △최소 육지·해양의 30% 법적으로 보호, △보호지역의 (최소) 1/3 엄정 보호, △모든 보호지역의 효과적 관리	'21~'30
	 캐나다	○ 2030로드맵(Canadian Parks and Wilderness Society, '22) - 캐나다 정부의 '30년까지 30% 보호 목표 설정 (육상 29.3%, 해양 30.4%) - 연방정부의 노력 강조 △자연보전에 \$3.2B 투자, 국립공원 확대 등 - 30by30 달성 캠페인(CPAWS, '22.5~, 비전: 50%보전)	~'30
	 일본	○ 30by30 로드맵(관계정부합동, '22) - OECMs이 로드맵의 핵심이며 광범위한 연대(30*30 alliance) 구축 - 환경성에서 시범적용을 위한 OECM 인증(certification) 시스템 구축 등 - 목표달성 주요 과제 제시 △PA 확장·질적 개선, △OECM 발굴·관리, △중요지역·보전효과 가시화, △타 분야(탈탄소, 유기농 등) 제휴 등	~'30

2. 국내 보호지역 현황

- **[정량 수치]** 내륙(육상+육수) 17.3%(17,351km²), 연안·해양 1.8%(7,968km²)를 보호지역으로 지정·관리 중('22년 기준)

【 전체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면적('22년 기준) 】

구분	국토 면적		보호지역(KDPA)	
	면적(km ²)	비율(%)	면적(km ²)	비율(%)
합계	539,287.5	100	25,318.9	5.3
육상	96,638.2	17.9	16,561.8	17.1
육수*	3,658.3	0.7	789.5	21.6
연안·해양**	438,991	81.4	7,967.6	1.8

* K-M GBF에서는 육상 보호지역을 육상과 육수로 구분하여 각각 30% 목표 설정 권고

** 연안·해양 기준은 우리나라 관할해역(EEZ, 438,991km²) 기준(KDPA)으로 산정

- **[질적 수치]** K-M GBF에서는 특히 생물다양성, 생태계의 기능 및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·관리 권고

- 중요생물다양성지역(KBAs*, 40개소** 2,023.3km²) 중 28.7%(580.7km²) 보호

* **(KBAs : Key Biodiversity Areas)** CBD에서 세계보호지역 평가척도로 적용하는 곳, IUCN 적색목록인 멸종위기종 분포, 생태계 위협정도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정

** 한강하구, 만경강 및 하구, 무안갯벌 등 중요조류서식지 40개소(출처: World Database of KBAs)

-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(8,285km²)의 11.2%(926.5km²),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(40,182km²)의 32.2%(12,943.7km²)를 보호

【 중요지역 질적 비교('22년 기준) 】

구분	전체 면적		보호지역(KDPA)	
	면적(km ²)	비율(%)	면적(km ²)	비율(%)
국토면적(육상·육수)	100,296.5*	100	17,351.3	17.3
중요생물다양성지역 (40개)	2,023.3	2.0	580.7	28.7
생태자연도 1등급	8,285.1	8.6	926.5**	11.2
국토환경성평가 1등급	40,182.0	40.1	12,943.7	32.2

* GIS 프로그램에서 산정한 국토면적

** 생태자연도 1등급이면서 별도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환경보전지역(282km²),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(169km²), 상수원보호구역(162km²), 수원함양보호구역(140km²) 등

III. 그간 성과와 개선방향

성과

- **[보호지역]** 육상 보호지역 지속 확대*('10년 6.2% → '18년 15.6% → '22년 17.3%)로 국제권고 수준('20년까지 17%) 달성
 - * 신규 유형의 보호지역 발굴(상수원보호구역, 자연환경보전구역, 해양(생물·경관) 보호구역 등) : ('14년) 10개 법률 20개 유형 → ('22년) 16개 법률 29개 유형
- **[OECM]** OECM 정의 채택(CBD COP14, '18) 이후 부처별 OECM 발굴·등재를 위한 연구* 추진, 보호지역 관련 법정계획 등에 반영
 - * IUCN-환경부 공동 한국의 OECM 발굴사업(국립공원공단, '22~'24), 국가 해양보호구역 확대(해수부, '22), OECM 지정 위한 풍혈지 조사(국립수목원, '23) 등
- **[관리체계]** 관계부처 합동 보호지역 통합DB정보시스템(KDPA) 구축·운영('17~), 범정부 논의·소통 체계 구축* 및 관리효과성 평가** 추진
 - * 국가보호지역 관계기관 협의체('17~'21) 및 국가보호지역 포럼('22~) 운영
 - ** 국립공원('07~),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·해양보호구역('12~), 습지·생태경관보호지역('22~'23, 시범)

개선방향

- **[확대]** 해양 보호지역('22년 1.8%)은 국제 권고수준('30년까지 30%) 확대, 산지면적 확충 노력 필요*(연간 목표 +20km², 현재 - 87km²)
 - * (산림면적) 백두대간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면적 증가, 개발 압력으로 전체 면적은 감소
- **[질적관리]**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에 대한 규명과 질적 관리(생태계 대표성, 연결성 등 확대)도 강화
- **[국민혜택]** '보전' 중심 관리에서 주민지원, 지역경제 활성화, 국민 혜택 확대 등 이익 공유 노력 강화, 사유지 관리정책* 보완
 - * 생태계서비스지불제,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보호관리협약제도 등 제한적 시행

Ⅳ. 비전 및 목표

1. 비전 및 주요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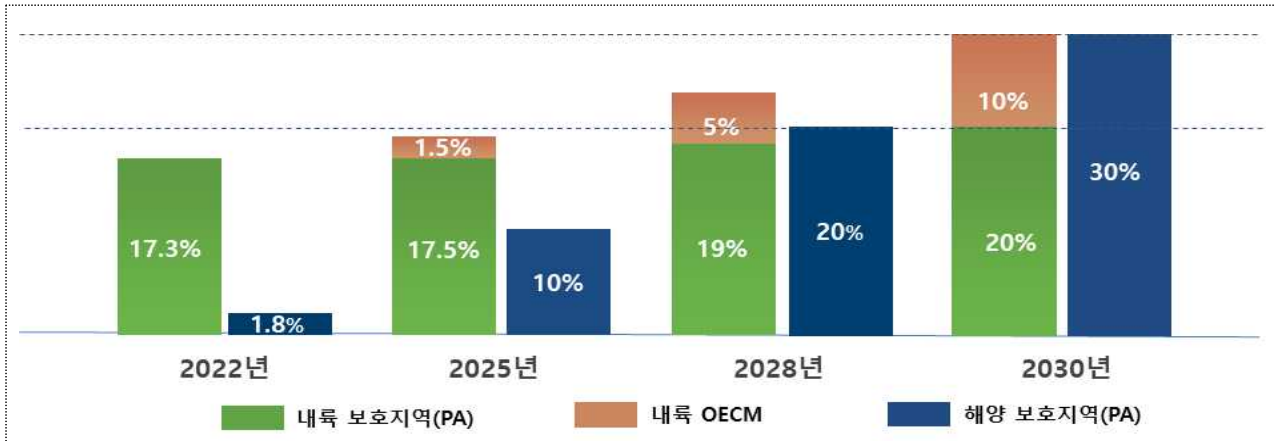
2030 비전	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하여 모두가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
목표	①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%를 보호지역·OECM으로 관리되도록 노력 ② 지속가능 이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로 자연혜택을 국민에게 더 많이 제공

3대 전략 및 6개 추진과제

1. 보호지역·OECM 확대	1-1. 보호지역·OECM 지정·발굴 확대 1-2. 생물다양성 중요지역 보전 강화
2. 보호지역·OECM 관리체계 개선	2-1. 보호지역 질적 관리 개선 2-2. 참여형 관리체계 강화
3. 지역사회 상생 기반 강화	3-1. 보호지역 내 주민과 상생협력 강화 3-2. 보호지역·OECM 인근 주민·지역사회 혜택 강화

2. 국가 보전목표 및 성과지표

□ 2030 국가 보전목표



※ 내륙, 해양 OECM에 대한 검토 진행 중으로 이후 보호지역/OECM 비율은 변경 가능

□ 정책 패러다임

구분	기존에는(As is)	앞으로(To be)
주체	정부 중심	정부 + 지자체·기업·민간
대상	법정 보호지역	법정 보호지역 + OECM
목표	보전 중심	보전 + 지속가능 이용 확대
체계	부처별	통합적 접근(통합 DB + 플랫폼)
접근	규제, 제한적 보상	자발적 참여+자율적 규제, 협력+지원+혜택 강화

□ 주요 성과지표

전략	성과지표	現 상황('23.11)	목표('30)
1. 보호지역·OECM 확대	보호지역(OECM 포함) 비율 (육상/해양)	17.3% / 1.8%	30% / 30%
	IUCN 녹색목록 인증 개소 수	3개소	15개소
2. 보호지역·OECM 관리체계개선	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(습지·생태경관·산림유전자원·해양보호구역)	일부 이행	100%
	연간 보호지역·OECM 자원봉사자 수	약 43만명/년 ('21. 국립공원 57,125명)	40만명 이상/년 ('32. 국립공원 15만명 ↑)
3. 지역사회 상생기반강화	보호지역 내 생활여건 개선마을 (갯벌생태마을, 공원마을 등)	27개소	120개소
	자연기반 지속가능발전모델 수 (람사르습지도시, 생물권보전지역 등 중복 포함)	16개소	25개소

V. 추진 과제

전략 1. 보호지역·OECM 확대

- ◇ **[상황진단]** 국제사회는 OECM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손실방지 대책 강화 촉구
- ⇒ **[추진방향]** OECM을 포함하여 보호지역 확대 노력,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의 보전 강화

1-1 보호지역·OECM 지정·발굴 확대

①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지속 (관계부처 합동)

- 부처별 보호지역 지속 확대를 위한 후보지 조사*·발굴 강화
 - * 전국 내륙습지 정밀조사, 해양생태계 종합조사, 국가산림자원조사, 문화재 기초조사 등
- 자연분야 보호지역의 신규 지정 확대(국립공원, 습지보호지역* 등)
 - * (국립공원) 육상 '21년 3,973→'32년 5,351km², 해상·해안 '21년 2,753→'32년 2,809km²
(습지보호지역) 내륙 '22년 137.4→'27년 150km², 연안 '22년 1,497.2→'27년 1,580km²
- 자연유산*, 백두대간**, 산림보호구역 등 등재 유형·건수 확대 지속
 - * 천연기념물, 천연보호구역, 명승 지정 확대, ** 생태축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확대
- 무인도서, 갯벌*, 영해 등 생태적 우수지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속
 - * 전체 갯벌의 절반 이상(1,318km²)을 보호구역으로 지정·보호, 보전이 시급한 지역(10개소)을 대상으로 갯벌관리구역(보전구역 및 휴식구역) 지정 등

② 지역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

- 지자체별 자연환경 특성*을 고려한 보전 목표 설정 및 이행 강화
 - * (광역지자체별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보호 비율) 제주 440.8km² 중 49%, 서울 115.2km² 중
- 개별 법령, 조례* 등에 기반한 지자체 지정 보호지역 확대
 - * (예시)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철새보호구역

③ 부처별 OECM 발굴·등재 및 공감대 형성 (관계부처 합동)

- OECM의 후보지 유형* 발굴 및 잠재자원 선정, GIS DB 구축

* (예시) 하천(특별보전지구), 자연휴양림·사찰림(공익용 산지) 등

- 보호지역의 완충·협력 공간, 복원효과 평가를 거친 생태복원지역 (도시생태축 복원, 갯벌 복원 등) 등 OECM 등재 검토

- 부처별 OECM 등재 시범사업*(23), 한국보호지역 통합DB 시스템 (KDPA) 및 국제사회(UNEP-WCMC)에 단계적 등재 추진

* 보전재산, 학술림, 하천의 특별보전지구 등

- OECM 발굴·관리* 시스템 구축 검토(25~)

* OECM 발굴·관리 과정에서 필요시 OECM 정의, 유형 발굴·등재·관리,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

- OECM의 체계적 발굴·등재를 위한 ‘한국형 OECM 매뉴얼*(K-OECM tool-kit)’ 개발 및 소관 특성을 감안한 부처별 가이드라인 적용·시행(24~)

* OECM 개념, 글로벌 표준, 잠재 OECM 발굴 주요 검토대상, OECM 발굴 기준 및 발굴과정, 발굴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, 발굴체계 등

- 발굴·등재의 확장과 자율성 확보, 다양한 이해관계자(정부, 지자체, 기업, 시민사회단체, 협회·단체, 개인 등)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증방안 마련

- OECM 발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지자체, 지역주민 대상 교육·홍보* 실시

* 홍보 브로셔 제작·배포,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, 우수사례 발굴, 인식확산 캠페인 등 추진

【 OECM 발굴 확산을 위한 단계적 접근 】

1단계(~'25)	2단계(~'28)	3단계(~'30)
- 인식증진, 기반 구축 및 시범 등재로 공감대 확산 - 후보지 목록 및 기초자료 구축	- 유형별 대표지역 발굴 및 네트워크 확장·활성화	- OECM 발굴 확산

1-2 생물다양성 중요지역 보전 강화

① 생물다양성 중요지역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(환경부, 해수부, 산림청)

- 과학기반 생물다양성 중요지역(생물다양성, 생태계 기능·서비스 측면)의 규명*(~'25)으로 보호지역·OECM 확대 후보지역 선정

* IUCN의 KBAs 지정 지침, 환경주제도(생태자연도, 국토환경성평가지도, 도시생태현황지도, 국가생태계서비스평가 등), 산림 등 분야별 조사·모니터링 결과 등을 활용하여 논의

- 글로벌 표준을 준수*하여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현황, 관리 특성 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** 식별 및 부처별 체계적 평가 추진

* (IUCN) 멸종위기종 분포, 생태계 위협 등 근거로 KBAs 지정 지침 제시 : Guidelines for using A Global Standard for the Identification of Key Biodiversity Areas (KBA Standards and Appeals Committee, '20)

** 우리나라는 한강하구, 만경강 및 하구, 무안갯벌 등 40개의 중요조류서식지를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식별하여 KBA 등재

② 생물다양성 중요지역 보전 확대 (환경부, 해수부, 산림청)

- 생태계가 양호한 지역(생태자연도 1등급,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) 등에 대한 보전현황 격차(보호지역 비율*) 분석 지속

* (생태자연도 1등급) 11.2%(926.5km²), (국토환경성평가 1등급) 32.2%(12,943.7km²), (KBAs) 28.7%(580.7km²) 등

- 중요생물다양성지역으로 규명된 경우 지역 공론화 과정을 거쳐 OECM 등으로 우선 발굴·등재 추진

- 국가 보호지역 중 엄격한 보전 필요시 핵심지역*으로 지정·관리 검토

* 자연공원(보존지구, 특별보호구역), 백두대간/생태경관/습지(핵심구역), 천연보호구역 등

- 국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IUCN 녹색목록*으로 인증 확대**

* 세계적으로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 보호지역 및 보전지역을 발굴하여 인증

** (예시) 자연공원 녹색목록 확대목표 : '23년 3개소(지리산, 설악산, 오대산) → '32년 16개소

전략 2. 보호지역·OECM 관리체계 개선

- ◇ **[상황진단]** 국제사회는 보호지역·OECM의 양적 확대와 함께 생태계 질적 관리 제고 요구, 정부 중심의 보호지역 관리에 한계
- ⇒ **[추진방향]** 보호지역 관리의 전과정 평가, 사회전반(국가-지자체-기업-시민사회단체-국민 등)의 참여형 관리체계 구축

2-1 보호지역 질적 관리 개선

① 보호지역 관리의 전과정 평가 강화 (환경부, 산림청, 문화재청, 해수부)

- 내륙습지보호지역, 생태·경관보전지역의 평가* 확대('22~'23 시범평가 → '24 전체 대상, 5년 주기), 평가·환류체계 정립 및 법적근거 마련('25)
 - * 보전계획 수립, 이행현황, 보호지역 관리 성과 등 보호지역 관리 전과정을 정량적으로 평가
-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주기적 평가(5년 주기) 및 결과의 지역관리 계획 반영,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 및 관리체계* 확립
 - * (사업) 현지내 보전, 외래식물 관리, 인공조림지 관리, 특이서식지 관리, 훼손지 복원 등 (업무) 지정·해제, 사업 인허가, 출입승인, 사법, 위탁사업 검토, 연구·모니터링 등
- 자연유산의 관리효과성 평가지표 마련(~'24), 국립공원 중 특별보호구역 지정·관리 매뉴얼* 고도화
 - * 특별보호구역 관리방법 개발, 관리목표 설정 및 달성 여부에 따른 평가기준 정립 등
- 해양보호구역의 긍정적 성과 발굴 및 확산 등을 위해 관리효과성 평가를 제도화하여 연차 단위로 의무적 실시('30년까지 100% 실시)

② 보호지역의 훼손지 복원 강화(환경부, 산림청, 해수부)

- 보호지역 내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대상(보호지역간 연결성 증진 포함)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원 추진
- 기존 연구자료의 활용, 지자체 수요 조사, 갯벌 복원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바탕으로 갯벌 복원 후보지 발굴 및 확대

2-2 참여형 관리체계 강화

① 보호지역·OECM 관리 거버넌스 구축 (관계부처 합동)

- ‘국가보호지역 확대 포럼’^{*}의 지속 운영으로 정부, 지자체, 관계기관, 전문가,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및 소통 강화^{**}, 운영근거 마련(‘24~)

* (정부) 환경부, 해수부, 국토부, 농식품부, 국방부, 산림청,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(민간) 부처 산하기관 등 연구기관, 민간전문가, 소관별 협회·단체 등 이해관계자

** 주요 안건의 원만한 협의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실무자 회의 개최 등

- OECM 발굴 및 자연공존문화(자발참여 + 자율규제) 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가칭생물다양성(30by30) 파트너십^{*} 구축

* (대상) 기업, 시민사회단체, 종교단체, 미래세대,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
(주요내용) ①보호지역 정책 이행·모니터링 자문, ②OECM 확인·인증, ③보호지역·OECM 홍보, ④보전·협력 참여 확대(ESG,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) 등

- 보호지역·OECM 특성을 고려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보호지역·OECM의 보전, 이용, 관리^{*} 도모

* (예시)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자원봉사 연계 프로그램 지원, 프로그램의 다양화(모니터링, 외래생물 제거, 정화활동, 자연해설·교육, 시설정비 등) 및 전문화 추진, 네트워크 구축 등

② 보호지역·OECM 정보시스템 고도화 (관계부처 합동)

- 범정부 차원의 보호지역과 OECM^{*} 지정·발굴 현황에 대한 통합 DB 구축 검토

* 효과적 OECM 발굴·정보 구축을 위해 자발적 목록화 방안 병행 추진 검토

- 공공·민간 연구기관, 시민사회단체 등이 보유한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·OECM 관련 정보를 통합·관리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

- 한국보호지역 통합DB정보시스템(KDPA) 개선(‘25~) 및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(WDPA) 등재와 연계 운영

전략 3. 지역사회 상생기반 강화

◇ **[상황진단]**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익 공유는 상대적 부족, 생태 관광 등 생태계서비스 수요 증가

⇒ **[추진방향]** 보호지역 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주민지원 확대, 보호지역-지역사회 연계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사회까지 혜택 확산

3-1 보호지역 내 주민과 상생협력 강화

① 보호지역 내 주민지원 강화 (환경부, 해수부, 산림청)

- 주민불편 최소화, 지역사회 협력 유인을 위해 소유주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강구(사유지 매입, 생태계서비스 지불제*, 보호관리협약제도** 등)
 - * 국립공원 인근지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('24~, 대상 선정방안 마련, 이해관계자 협의 착수), 갯벌 휴식구역·보전구역에서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도입 추진 검토
 - ** 사찰림 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협약제도 대상 확대: ('22) 3개소 → ('27) 6개소
- 생태계서비스지불제* 시행 대상 지역 중 보호지역은 지불제 지원 단가에 가중치 부여 등 지역주민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(~'25)
 - * 생태계서비스 유지·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,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
- 매년 보호지역 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활동 실적을 평가·관리 하고 우수 주민·지자체에 시상하여 참여 동기 부여('25~)

②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(환경부, 해수부)

- 갯벌관리구역 등* 인접지역 중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곳을 대상으로 갯벌생태마을 시범사업** 추진
 - * 갯벌관리구역, 갯벌복원사업지역, 해양보호구역, 습지보호지역, 습지도시로 인정된 지역
 - ** 주민협의체 운영비, 갯벌관리 편의시설 설치, 생태관광, 종묘방류 사업 등 지원
- 자연공원 내 마을의 노후화된 기초생활환경과 편의시설 개선*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거주환경 제공('22년 27개 → '30년 120개소)
 - * 마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·확충, 주택환경 개선, 특색있는 마을경관 조성 등

① 보호지역-지역사회 연계 생태관광 활성화 (환경부, 산림청, 해수부)

-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체험형·체류형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자연혜택 제공
 - * 자연공원구역 내 마을, 생태우수지역 및 인근 지역 관광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발굴·운영
농·산·어촌 마을 생활문화 체험(예시, 제주도 한 달 살기, 전남 강진군 농촌민박 등)
-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연계한 산림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*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 및 생태적 이용 활성화 추진
 - * (점봉산) 곰배령 생태탐방, (울진 소광리) 금강소나무림 숲길 이용 프로그램 등 운영
- 지역별 탐방 상품과 연계한 거점형 생태관광지역* 육성 지속 및 외국인 대상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** 개발·운영('24~)
 - * (한려해상) 통영 시티투어, (내장산) 서해랑길 투어, (소백산) 전통문화 투어 등
 - ** (아시아) 한류체험, (유럽) 불교문화, (영미권) 전통문화 및 DMZ 연계
- 생물권보전지역, 랍사르습지, 세계자연유산, 우수 해양생태자원(갯벌*, 사구, 해양생물 등) 보유지역 대상, 지역별 생태체험·생태관광 활성화
 - * 어촌체험 휴양마을과 갯벌체험시설, 갯벌안내센터 등 갯벌 관련 시설간 협력네트워크 구축, 다양한 갯벌생태관광상품 개발·확대 유도

② 자연 기반 지속가능 지역발전모델 발굴·확산 (관계부처 합동)

- 백두대간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과 공생하면서 활력을 제고하는 별도 촉진구역* 지정·지원 검토
 - *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발굴, 각 지역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구역 지정, 국가생태축·광역생태축 등과 연계하여 생태계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
- 랍사르습지도시*(‘23년 7개소 → ‘30년 12개소) 및 생물권보전지역**(‘23년 9개소 → ‘30년 13개소) 등 국제사회 인증 확대로 지역 가치 제고
 - * 랍사르협약이 인증한 도시(17개국 43개, '23), 습지도시 로고 사용 등 지역상품 경쟁력 향상
 - **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(전세계 134개국 738개소, '23)

Ⅵ. 이행 방안

① 보전 목표의 체계적인 이행 강화

- 국가 보전목표 성과의 주기적인 이행평가(매년)
 - *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점검·평가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진행상황 평가
- 지자체별 보호지역·OECM 보전 목표 설정·이행* 강화(지역생물 다양성전략 반영 등)
 - * 지자체별 보전 목표 설정 및 이행 지원·점검·협력 체계 구축, 지자체 조례, 시·도 환경·산림계획 연계 등 지역 차원의 주류화 정책

② 범정부 및 사회 전반의 참여 확대

- 보호지역 확대, OECM 발굴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*, 사회전반 (기업-시민사회단체-국민 등)의 실질적 참여형 관리체계 구축
 - * 국가보호지역 확대 포럼의 소통 강화(실무자 회의 등) 및 운영 근거 마련
 - ** 가칭생물다양성(30by30) 파트너십 구축·운영 활성화, 기업(ESG, TNFD 등)과 시민사회 단체 등의 실질적 협력 강화 지원 등
- 정부 부처(산하기관), 지방정부(공공단체), 연구기관, 시민사회단체 등이 보유한 관련 데이터 구축(오픈 DB화), DB 연계 및 공유 강화

③ 운영·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

- 효과적인 OECM 발굴·관리* 시스템 구축
 - * OECM 발굴·관리 과정에서 필요시 OECM 정의, 유형 발굴·등재·관리,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법령개정 필요성 검토
- 한국형 OECM 매뉴얼 개발·활용

참고1

국내 보호지역 지정현황 (KDPA, '22)

□ 내륙 보호지역 : 17.3%

○ $17,351.26\text{km}^2$ (중복 제외) / $100,284\text{km}^2$ (국토면적) $\times 100\% = 17.3\%$

□ 해양 보호지역(연안 포함) : 1.8%

○ $7,967.62\text{km}^2$ (중복 제외) / $438,991\text{km}^2$ (EEZ 포함 면적) $\times 100\% = 1.8\%$

부처	보호지역 유형		소관법률	전체 개소수 및 면적(k㎡)			
				개소	합계	육상	해양
총계(중복 포함)				65,558	40,337.35	27,887.89	12,449.46
환경부	자연공원	국립공원	자연공원법	22	6,796.26	4,028.63	2,767.64
		도립공원		30	1,045.36	740.64	304.73
		군립공원		27	238.31	235.42	2.89
	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		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	1	26.57	26.57	-
	야생생물보호구역			394	996.93	996.93	-
	특정도서		도서생태계법	257	13.81	13.81	-
	생태.경관 보전지역		자연환경보전법	9	243.90	243.90	-
	생태.경관보전지역(시도)			23	37.55	37.55	-
	습지보호지역		습지보전법	30	133.29	133.29	-
	습지보호지역(시도)			6	2.14	2.14	-
	수변구역(4대강)		4대강 수계법	4	1,189.23	1,189.23	-
	상수원보호구역		수도법	294	1,151.78	1,151.78	-
	특별대책지역		환경정책기본법	2	2,001.86	2,001.86	-
	해양수산부	습지보호지역(갯벌)		습지보전법	13	1,509.54	-
습지보호지역(시도)		1	6.15		-	6.15	
해양 보호 구역		생태계	해양생태계법	16	266.75	-	266.75
		생물		2	93.67	-	93.67
		경관		1	5.23	-	5.23
환경보전해역		해양환경관리법	4	1,882.06	982.59	899.47	
수산자원보호구역		수산자원관리법	30	3,210.57	712.99	2,497.58	
국토부	도시자연공원구역		공원녹지법	13	280.54	280.54	-
	자연환경보전지역		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	1	9,794.39	6,700.77	3,093.62
문화재청	천연기념물		문화재보호법	373	1,189.61	229.17	960.44
	천연보호구역			11	456.32	431.68	24.64
	명승			113	218.90	201.79	17.11
산림청	백두대간보호지역		백두대간법	1	2,646.00	2,646.00	-
	산림 보호 구역	산림유전자원	산림보호법	5,457	1,763.66	1,763.66	-
		생활환경		12	0.14	0.14	-
		경관		3,565	186.96	186.96	-
		수원함양		52,517	2,915.09	2,915.09	-
		재해방지		2,329	34.78	34.78	-

참고2

OECD 주요 검토대상 유형(예시)

검토대상 유형			OECD 잠재자원
자연환경국민신탁	보전재산 / 보전협약지		10개소 / 9개소
환경부	자연휴식지		75.7km ²
	생물권보전지역 완충구역		완충구역 9개소
	하천의 특별보전지구		8개 하천 198km ²
해수부	무인도서	절대보전/ 준보전/	140개소 / 550개소
	해양 용도 구역	환경생태계 관리구역	6,020.8km ²
		연구교육보전구역	1,637.3km ²
		안전관리구역	3,999.0km ²
	자율어업대상지역		1,133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관리
해수부/지자체	보호수면(수산자원관리법)		47.16km ²
지자체	해양보호구역 외 갯벌지역		2,489.4km ²
국토부	도시지역(녹지지역)		12,592km ²
	관리지역(보전)		10,116km ²
	보호지구(생태계)		28km ²
산림청	자연휴양림		국립자연휴양림 등 192개소
	전통사찰보존구역 / 사찰림		13.2km ² / 662.7km ²
문화재청	세계자연유산구역 완충구역		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2개소
농식품부	중요농업유산		17개소
민 간	기업 CSR 지역, 종교성지 등		보전가치, 근거/수단 미흡

※ 위 표는 단순히 검토대상을 나열한 것으로 최종 등재 여부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